SHINYOUNG ASSET MANAGEMENT

주요 변경 대비표

1. 해당 투자신탁명 : 신영마라톤 증권 투자신탁 A1호(주식)

2. 주요 정정 사유 :

1) 자본시장법에 적법하도록 장내파생상품 투자한도 등 정정

2) 소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 제3호 반영: 이익금이 0보다 적을 경우 분배 유보

3) 법 시행령 제92조 및 제270조 개정(2009.12.21) 사항 반영
: 자산운용보고서 기본 전자우편 교부 등으로 변경

4) 세법 변경에 따른 과세관련 사항 정정

5) 작성기준일 변경으로 인한 재무제표 등 업데이트

-규약

항 목	정 정 전	정 정 후
제18조 (투자대상자산 취득한도)	집합투자업자는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신탁재산을 운용 함에 있어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따른다. 1. ~ 7. (생략) 8. 주식및채권관련장내파생상품의 거래는 거래에 따른 위탁증거금의 합계액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5% 이하가 되도록 한다. 9. ~ 10. (생략)	집합투자업자는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신탁재산을 운용 함에 있어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따른다. (~이하 현행과 같음) 1. ~ 7. (현행과 같음) 8. 주식및채권관련장내파생상품의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 이하**가 되도록 한다. 9. ~ 10. (현행과 같음)
제19조 (운용 및 투자제한)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신탁업자에게 지시할 수 없다. 다만, 법령 및 규정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 4. (생략) 5. 주식및채권관련장내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이 투자신탁의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6. 주식및채권관련장내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을 포함한 투자신탁재산 총위험평가액이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를 초과하는 행위. 7. ~ 8. (생략)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신탁업자에게 지시할 수 없다. 다만, 법령 및 규정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 4. (현행과 같음) **5. 주식및채권관련장내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이 투자신탁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의 10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6. <삭 제>** 7. ~8. (현행과 같음)

제20조 (한도 및 제한의 예외)	①다음 각호의 1의 기간 또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8조 제1호 내지 제5호의 규정은 그 투자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제4호 및 제5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투자비율을 위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1. ~ 4. (생략) 5. 투자신탁재산인 증권 등 자산의 가격변동으로 제18조제1호 내지 제5호의 규정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 ②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불가피하게 제18조제6호 내지 제9호, 제19조제1호 내지 제7호에 따른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초과일부터 3개월까지(부도 등으로 처분이 불가능한 투자대상자산은 그 처분이 가능한 시기까지)는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1. ~ 5. (생략) ③제18조제1호 내지 제8호, 제19조제2호본문 및 제4호의 규정은 투자신탁의 최초설정일부터 1개월까지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①다음 각호의 1의 기간 또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8조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은 그 투자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제4호 및 제5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투자비율을 위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1. ~4. (현행과 같음) 5. 투자신탁재산인 증권 등 자산의 가격변동으로 제18조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 ②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불가피하게 제18조**제5호 내지 제10호, 제19조제2호 내지 제5호**에 따른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초과일부터 3개월까지(부도 등으로 처분이 불가능한 투자대상자산은 그 처분이 가능한 시기까지)는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1. ~5. (현행과 같음) ③**제19조제2호본문, 제4호 및 제5호**의 규정은 투자신탁의 최초설정일부터 1개월까지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3조 (이익분배)	①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에 따라 발생한 수익증권별 이익금을 투자신탁회계기간 종료일 익영업일에 분배한다. ② (생략)	①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에 따라 발생한 수익증권별 이익금을 투자신탁회계기간 종료일 익영업일에 분배한다. **다만, 이익금이 0보다 적은 경우에는 분배를 유보한다.** ② (현행과 같음)
제39조 (보수)	①투자신탁재산의 운용 및 관리 등에 대한 보수(이하 “투자신탁보수”라 한다)는 투자신탁이 부담하며, 그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집합투자업자가 취득하는 집합투자업자보수 2. 판매회사가 취득하는 판매회사보수 3. 신탁업자가 취득하는 신탁업자보수 4. 일반사무관리회사가 취득하는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 ②~③ (생략)	①투자신탁재산의 운용 및 관리 등에 대한 보수(이하 “투자신탁보수”라 한다)는 투자신탁이 부담하며, 그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집합투자업자가 취득하는 집합투자업자보수 2. 판매회사가 취득하는 판매회사보수 3. 신탁업자가 취득하는 신탁업자보수 **4. <삭 제>** ②~③ (현행과 같음)

제50조 (공시 및 보고서 등)	①~⑧ (생략) ⑨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운용보고서,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제공하는 경우 판매회사를 통하여 서면으로 우송할 수 있다. 다만, 수익자가 전자우편을 통하여 수령한다는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는 전자우편에 의하여 제공할 수 있다.	①~⑧ (현행과 같음) ⑨제5항 및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운용보고서,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제공하는 경우 판매회사를 통하여 직접 또는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수익자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 제89조 제2항 제1호 및 제3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수익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
부칙<2>	<신설>	**제1조(시행일)** 이 신탁계약은 2010년 월 일부터 시행, 적용한다.

-신고서(설명서)

항 목	정 정 전	정 정 후
작성 책임자	본부장 이기현	팀장 이준호
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5. 투자운용인력** **가. 책임투자운용인력**	기준일 변경(2009.3.31)	기준일 변경(2010.1.31)
8.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가. 투자대상**	투자비율 적용 예외 집합투자규약 제 18 조 제 1 호 내지 제 5 호 (주식, 채권, 자산유동화증권, 어음, 금리스왑거래)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 의 기간 또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투자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다음 제 4 호 및 제 5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투자비율을 위반한 날부터 15 일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1. 투자신탁 최초설정일부터 1 월간 2. 투자신탁 회계기간 종료일 이전 1 월간 3. 투자신탁 계약기간 종료일 이전 1 월간 4. 3 영업일동안 누적하여 추가설정 또는 해지청구가 각각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	투자비율 적용 예외 - 다음 각호의 1의 기간 또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기 1 내지 **4**의 투자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다음 제4호 및 제5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투자비율을 위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1. 투자신탁 최초설정일부터 1월간 2. 투자신탁 회계기간 종료일 이전 1월간 3. 투자신탁 계약기간 종료일 이전 1월간 4. 3영업일동안 누적하여 추가설정 또는 해지청구가 각각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는

	는 경우 5. 투자신탁재산의 증권 등 자산이 가격변동으로 집합투자규약 제 18 조 제 1 호 내지 제 5 호의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미기재 내용 추가>	경우 5. 투자신탁재산의 증권 등 자산이 가격변동으로 상기 1 내지 **4**의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 아래의 사유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상기 5 내지 11, 하기 투자제한 2 내지 4의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초과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다만, 부도 등으로 매각이 불가능한 증권은 매각이 가능한 시기까지 이를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봅니다. ①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투자대상자산의 가격 변동 ②투자신탁의 일부해지 ③담보권의 실행 등 권리행사 ④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증권을 발행한 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합병 ⑤그 밖에 투자대상자산의 추가 취득 없이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
나. 투자제한	파생상품 투자 : 주식 및 채권관련장내파생상품 거래에 따른 위험평가액[투자신탁의 설정일부터 매 1 월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그 매 1 월의 매일의 위험평가액을 산술평균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이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의 10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파생상품 투자 : **주식 및 채권관련장내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의 10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11.매입,환매,전환 절차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 **나. 환매** **(6)수익증권의 환매제한**	집합투자업자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환매청구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①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자를 정하기 위하여 일정한 날을 정하여 수익자명부에 기재된 수익자 또는 질권자를 그 권리를 행사할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 보도록 한 경우로서 이 일정한 날의 **전전영업일**(17 시 경과 후에 환매청구하는 경우에는 **전전전영업일**)과 그 권리를 행사할 날까지의 사이에 환매청구를 한 경우 ② 법령 또는 법령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환매가 제한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환매청구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①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자를 정하기 위하여 일정한 날을 정하여 수익자명부에 기재된 수익자 또는 질권자를 그 권리를 행사할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 보도록 한 경우로서 이 일정한 날의 **전영업일**(17 시 경과 후에 환매청구하는 경우에는 **전전영업일**)과 그 권리를 행사할 날까지의 사이에 환매청구를 한 경우 ② 법령 또는 법령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환매가 제한되는 경우
13. 보수 및 수수	기준일 : 2008.12.8	기준일: 2009.12.8

료에 관한 사항 **나.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14. 이익 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 **가. 이익 배분**	(1) 수익자는 투자신탁회계기간의 종료에 따라 발생하는 수익증권별 이익금을 현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수익자는 수익자와 판매회사간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이익분배금에서 세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분배금 지급일의 기준가격으로 수익증권을 매수합니다. (2) 또한 투자신탁계약기간의 종료 또는 투자신탁의 해지에 따라 발생하는 투자신탁 원본의 상환금 및 이익금(이하 “상환금등”)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투자신탁계약 종료일 현재 투자신탁재산인 증권의 매각지연 등의 사유로 인하여 상환금등의 지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이후에 지급할 수 있습니다. (3) 수익자가 상환금등의 지급개시일 이후 5년간 이익분배금 또는 상환금등의 지급을 청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권리를 상실하고 판매회사에 귀속됩니다.	(1)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에 따라 발생한 이익금(종류형 투자신탁의 경우는 해당 종류 수익증권별 이익금)을 투자신탁회계기간 종료일 익영업일에 분배합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이익금을 수익자에게 금전 또는 새로이 발행되는 수익증권으로 분배합니다. **다만, 집합투자업자는 이익금이 0 보다 적은 경우에는 분배를 유보합니다.** (2) 수익자는 (1)에 의하여 분배되는 이익금을 금전 등으로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수익자는 수익자와 판매회사간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이익분배금에서 세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분배금 지급일의 기준가격으로 수익증권을 매수하여야 합니다. (3) 또한 투자신탁계약기간의 종료 또는 투자신탁의 해지에 따라 발생하는 투자신탁 원본의 상환금 및 이익금(이하 “상환금 등”)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투자신탁계약 종료일 현재 투자신탁재산인 증권의 매각지연 등의 사유로 인하여 상환금 등의 지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이후에 지급할 수 있습니다. (4) 수익자가 상환금 등의 지급개시일 이후 5 년간 이익분배금 또는 상환금 등의 지급을 청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권리를 상실하고 판매회사에 귀속됩니다.
나. 과세	**(1)투자신탁에 대한 과세 – 별도의 세금부담이 없는 것이 원칙**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는 소득이 발생하는 투자신탁 단계에서의 과세와 수익자에게 이익을 분배하는 단계에서의 과세로 나누어집니다. 투자신탁 단계에서는 소득에 대해서 별도의 세금부담을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1)투자신탁에 대한 과세 – 별도의 <u>소득과세</u> 부담이 없는 것이 원칙**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는 소득이 발생하는 투자신탁 단계에서의 과세와 수익자에게 이익을 분배하는 단계에서의 과세로 나누어집니다. 투자신탁 단계에서는 소득에 대해서 별도의 세금 부담을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투자신탁재산에**

	예를 들어 투자신탁에서 납부한 채권 등의 이자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을 모두 환급을 받고 있으며, 외국원천징수세액은 다음과 같은 범위를 한도로 환급을 받고 있습니다.	**귀속되는 이자·배당소득은 귀속되는 시점에는 원천징수하지 아니하고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이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날(특약에 따라 원본에 전입되는 날 및 신탁계약기간 연장하는 날 포함)에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으로 원천징수하고 있습니다. 다만, 외국원천징수세액은 다음과 같은 범위를 한도로 환급을 받고 있습니다.**
	환급세액 = 외국납부세액 x 환급비율 *환급비율 : (사업연도 총소득 - 국내비과세소득)/(국외원천과세소득) 단, 환급비율 >1이면 1, 환급비율 <0이면 0으로 함	환급세액 = 외국납부세액 x 환급비율 *환급비율 : **(과세대상소득금액 / 국외원천과세대상소득금액)** 단, 환급비율 >1이면 1, 환급비율 <0이면 0으로 함
	발생소득에 대한 세금 외에 투자재산의 매입, 보유, 처분 등에서 발생하는 처분 등에서 발생하는 취득세, 등록세, 증권거래세 및 기타 세금에 대해서는 투자신탁의 비용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펀드가 공모에 따른 모집 또는 매출의 방법으로 주식을 발행하고, 아래의 ①~③의 모든 요건을 충족할 경우로서 증권시장 또는 전자증권중개거래를 통하여 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제117조제10호에 따라 증권거래세 면제 혜택을 받게 됩니다. ① 집합투자증권을 발행 할 것. ②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한 투자자 수가 30인을 초과할 것. ③ 30인(집합투자자가 150인 미만인 경우에는 그 전체 집합투자자 수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수) 이하의 집합투자자가 해당 투자신탁이 발행한 집합투자증권 총수의 100분의 95 이상을 보유하지 아니할 것.	발생소득에 대한 세금 외에 투자재산의 매입, 보유, 처분 등에서 발생하는 처분 등에서 발생하는 취득세, 등록세, 증권거래세 및 기타 세금에 대해서는 투자신탁의 비용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삭제>
	(2)수익자에 대한 과세 - 원천징수 원칙 수익자는 투자신탁의 이익을 지급받는 날, 특약에 의하여 원본에 전입하는 날, 또는 계약을 연장하는 날에 세금을 원천징수 당하게 됩니다.	**(2)수익자에 대한 과세 - 원천징수 원칙** 수익자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을 지급받는 날(특약에 따라 원본에 전입되는 날 및 신탁계약기간 연장되는 날 포함)에 과세이익에 대한 세금을 원천징수당하게 되며,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계좌간 이체, 계좌의 명의변경, 실물양도의 방법으로 거래하는 경우에도 보유기간 동안 발생한 과세이익에 대한 세금을 원천징수하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과세이익을 계산함에 있어**

		서 집합투자기구가 투자하는 증권시장에 상장된 증권(채권 및 외국집합투자증권 등 제외) 및 이를 대상으로 하는 선물, 벤처기업의 주식 등에서 발생하는 매매·평가 손익을 분배하는 경우 당해 매매·평가 손익은 과세대상인 배당소득금액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3)수익자에 대한 과세율 – 개인 15.4%(주민세 포함), 일반법인 14% 거주자 개인이 받는 투자신탁의 과세이익에 대해서는 15.4% (소득세 14%, 주민세 1.4%)의 세율로 원천징수 됩니다. 이러한 소득은 개인의 연간 금융소득(이자, 배당소득)이 4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 원천징수로 납세의무 종결되나, 연간 금융소득(이자, 배당소득)이 4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유형별 소득을 합산하여 개인소득세율(최고한도 세율 35%)로 종합과세 됩니다. 내국법인이 받는 투자신탁의 과세이익은 14%의 세율로 원천징수 (금융기관 등의 경우에는 제외) 됩니다. 이러한 소득은 법인의 결산 시점에 투자신탁으로부터 받게 되는 수입금액과 다른 법인 수입금액 전체를 합산한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율(최고 한도세율 25%)을 적용하여 과세하며, 이전에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 받게 됩니다. (4)<생략> ※ 상기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내용은 정부 정책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증권거래세 면제대상 범위가 변경됨에 따라 이 투자신탁의 경우 공모투자신탁임에도 불구하고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일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증권거래세 면제 대상에서 제외될수 있습니다. - 과표기준가격: 세금을 산정하기 위한 가격으로 신탁재산의 운용수익 중 채권이자에 대한 이자소득, 주식의 배당에 대한 배당소득 등 과세대상	**(3)수익자에 대한 과세율 – 개인 15.4%(주민세 포함), 일반법인 14%** 거주자 개인이 받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과세이익에 대해서는 15.4% (소득세 14%, 주민세 1.4%)의 세율로 원천징수 됩니다. 이러한 소득은 개인의 연간 금융소득(이자, 배당소득)이 4 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 원천징수로 납세의무 종결되나, 연간 금융소득(이자, 배당소득)이 4 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유형별 소득을 합산하여 개인소득세율로 종합과세 됩니다. 내국법인이 받는 투자신탁의 과세이익은 14%의 세율로 원천징수 (금융기관 등의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이러한 소득은 법인의 결산 시점에 투자신탁으로부터 받게 되는 수입금액과 다른 법인 수입금액 전체를 합산한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하며, 이전에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 받게 됩니다. (4)<현행과 같음> **※ 상기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내용 및 각 수익자에 대한 과세는 정부 정책, 수익자의 세무상의 지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수익자는 투자신탁에 대한 투자로 인한 세금에 대하여 조세전문가와 협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삭제>

	수익만을 고려하여 산출합니다. 이는 판매회사 영업점, 집합투자업자(www. syfund.co.kr) ·판매회사·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인터넷 홈페이지 등에서 기준가격과 함께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제 3 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 **1.재무정보** **2.연도별설정 및 환매현황**	기준일 : 2008.12.8	기준일: 2009.12.8
3.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	기준일: 2009.3.31	기준일: 2010.1.31
제 4 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다. 최근 2 개 사업연도 요약 재무내용**	기준일 : 2008.3.31	기준일 : 2009.3.31
라. 운용자산 규모	기준일 : 2009.3.31	기준일 : 2010.1.29
제 5 부. 기타 투자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3.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 **가.업무보고서** **(2) 자산운용보고서**	- 집합투자업자는 자산운용보고서를 작성하여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3개월마다 1회 이상 당해 투자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자산운용 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를 통하여 기준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직접 또는 우편발송 등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하나, 투자자가 전자우편을 통하여 자산 운용보고서를 수령한다는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는 전자우편에 의하여 교부할 수 있습니다.	- 집합투자업자는 자산운용보고서를 작성하여 해당 집합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3 개월 마다 1 회 이상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자산운용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를 통하여 기준일로부터 2 개월 이내에 직접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하나, 수익자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집합투자업자·판매회사 및 한국금융투자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 공시와 집합투자업자·판매회사의 본·지점 및 영업소에 게시하는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수익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우편발송으로 교부하여야 합니다.**

	- 자산운용보고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 회계기간의 개시일부터 3개월이 종료되는 날, 회계기간의 말일, 계약기간의 종료일 또는 존속기간의 만료일, 해지일 또는 해산일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 현재의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자산·부채 및 집합투자증권의 기준가격 · 직전의 기준일부터 해당 기준일까지의 기간 중 운용경과의 개요 및 해당 운용기간 중의 손익사항 · 기준일 현재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자산의 종류별 평가액과 집합투자재산 총액에 대한 각각의 비율 · 해당 운용기간 중 매매한 주식의 총수, 매매금액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회전율	[자산운용보고서 기재사항] - 회계기간의 개시일부터 3 개월이 종료되는 날, 회계기간의 말일, 계약기간의 종료일 또는 존속기간의 만료일, 해지일 또는 해산일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 현재의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자산·부채 및 집합투자증권의 기준가격 - 직전의 기준일부터 해당 기준일까지의 기간 중 운용경과의 개요 및 해당 운용기간 중의 손익 사항 - 기준일 현재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자산의 종류별 평가액과 집합투자재산 총액에 대한 각각의 비율 - 해당 운용기간 중 매매한 주식의 총수, 매매금액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회전율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4. 이해관계인 등과의 거래에 관한 사항 **가. 이해관계인과의 거래내역** **나. 집합투자기구간 거래에 관한 사항**	신설	기준일 : 2009.01.30.~2010.1.31.